

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

제정 2005. 5. 17 훈령 제187호
개정 2005. 10. 5 훈령 제196호(법제사무 처리 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용인시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적절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용인시 직장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의 명칭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3조(운영) ① 용인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소관부서를 정한다.

제4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입소절차) ① 용인시 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장 또는 어린이집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거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어린이집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입소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

제6조(입소자격 및 순위) ① 입소대상자는 용인시 공무원의 자녀로서, 12월 이상이 되는 취학하기 전의 어린이로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은 연중 할 수 있으며,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.

제7조(보육료 납부)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킬 때에는 시장과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가 협의하여 정한 소정의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퇴소조치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퇴소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자녀를 입소시킨 용인시 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
2.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경우
3.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
4.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경우

제9조(비용부담)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5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못하는 용인시 공무원 자녀의 보육료를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비치서류) 어린이집 운영관련서류는 영유아보육관련 법령 및 여성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관련 법령 및 여성부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훈령 제196호, 법제사무 처리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

입 소 신 청 서

접수번호 2000 -

대기신청일			보 호 자	부 모	(서명)
입소희망일					(서명)
아 동	성 명	(한자 :)	성별구분		
	생 년 월 일	(현재 : 년 개월)	입학전경력		
	주민등록번호		혈액형		
	등·하원시간	(도보, 차량)	시간	분	
보 호 자 ^ 공 무 원 v	부	(한자 :)	근무처 <small>*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세요</small>		
	모	(한자 :)	근무처 <small>*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세요</small>		
	주 소	(우편번호 :)			
	연락처	○ 직 장 : ○ 집 : ○ 핸드폰 :			
비 고 (어린이집에서 기록합니다)		입 소 일		퇴 소 일	
		입소반명	담임교사 : 반 인	퇴소반명	담임교사 : 반 인
		반 변 경 기 록		퇴소사유	

[별지 제2호서식]

입 소 승 인 결 정 통 지 서

접 수 번 호		2000 - 호		
입소승인일		2000. . 일부터 까지		
아 동	성 명	(한자 :)	성별구분	
	생년월일	(현재 : 년 개월)	입소반명	
	주민등록번호		혈액형	
보 호 자	부		근무처	
	모		근무처	
	주 소	(우편번호 :)		
결정사항				
<p>상기 아동을 「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용인시 00 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0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 인 시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인시 00 어린이집의 장</p>				